
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조치결과보고




〔스페이스 살림 조성공사〕

- 점검일시 : 2019.04.22 (월)
- 조치결과
- ◆ 점검자 : 한종수, 박상종

| 지적내용 | 점검사진 | 조치일자 | 조치사진 |
|--|--|---|--|
| | | 조치내용 | |
| <p>○ 감전재해 예방</p> <p>- 분전반은 관리책임자 (정/부)를 지정·표기하고 잠금장치를 하기 바람. 접지선을 연결하기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(전기 기계·기구의 접지)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16(분전반), 18(기계·기구 접지)</p> |   | <p>2019.04.23</p> <p>- 분전함 관리책임자 지정, 표기 및 시건 실시</p> <p>- 분전함 외함 접지선 연결 실시</p> |     |

| | | | |
|---|---|--|---|
| <p>○ 감전재해 예방</p> <p>-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설전선 콘센트는 접지극이 파손되어 있거나, 접지선이 없는 콘센트를 사용하고 있어 누전 시 근로자 감전에 의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접지를 보완하고, 옥외 사용시는 방수형 콘센트를 사용하기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(전기 기계·기구의 접지)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18(기계·기구 접지)</p> |  | <p>2019.04.23</p> <p>- 현장 내 공도구 일괄 점검 실시 및 접지극 파손 작업선 폐기 실시</p> <p>- 옥외에서 사용하는 작업선 방수형 콘센트 사용 실시</p> |  |
| <p>○ 기계기구 안전</p> <p>- 그라인더에 덮개 없이 작업 중이니 절삭날 파단에 의한 근로자 상해를 방지하는 덮개를 씌워 작업토록 교육하기 바람.</p> |  | <p>2019.04.23</p> <p>- 그라인더 보호커버 설치 실시 후 작업 투입</p> |  |
| <p>○ 거푸집동바리 안전</p> <p>- 동바리의 높이가 3.5m 초과 시 높이 2m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양방향으로 직교되도록 설치하고, 연결은 전용철물(돼지발톱 사용 금지)을 사용하기 바람.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10(거푸집 동바리)</p> |  | <p>2019.04.24</p> <p>- 파이프서포트 수평연결재 전용철물 사용하여 설치 실시</p> |  |

| | | | |
|---|---|--|---|
| <p>○ 가설통로 안전</p> <p>- 건물 내부에 설치한 비계는 30m이내마다 통로(수직이동 통로) 1개소를 설치하기 바람, 발판위의 자재(각목, 파이프 등)는 정리하기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8(강관비계)</p> |  | <p>2019.04.24</p> <p>- 구조물 내부 시스템비계 승강사다리 추가 설치 실시</p> |  |
| <p>○ 가설통로 안전</p> <p>- 가설비계에 설치되어 있는 수직이동 통로는 내부에 안전방망이 설치되어 있어 이동 통로를 사용하기 어렵거나 이동시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니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 바람.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p19(2.가설통로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)</p> |  | <p>2019.04.23</p> <p>- 외부 시스템비계 승강사다리 통로 확보 실시</p> |  |
| <p>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</p> <p>- 슬래브 단부 철근에 자재가 적치되어 있어 하부로 낙하할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적치되어 있는 자재를 이동 적치하고, 안전방망, 출입금지구역 등 낙하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</p> |  | <p>2019.04.23</p> <p>- 슬래브 단부 안전난간대 구간 낙하물예방 안전망 설치 실시</p> |  |

| | | | |
|---|--|--|---|
| <p>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</p> <p>- 흙막이가시설 레이커 철거를 위하여 사용중인 산소절단기는 산소용 호스 피복이 파손되어 있으니 점검을 실시하고, 사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호스를 교체하기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3조(가스용접 등의 작업)</p> |  | <p>2019.04.23</p> <p>- 레이커 해체용 산소절단기 산소용 호스 교체 실시 및 파손 호스 폐기</p> |  |
| <p>○ [모범사례] 전도재해 예방</p> <p>- 근로자가 말비계에서 작업중 양 끝부분에 있는 소음 발생기를 밟을 경우 경고음이 발행하여 근로자가 단부에 위치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어 전도사고 예방.</p> |  | <p>[해당사항없음]</p> | |